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 제6316호

對外貿易法中改正法律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貿易"이라 함은 物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物品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6. "電子貿易"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와 情報通信網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제2장의2(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전자무역의 촉진

제9조의3(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의 종합정책의 기본방향
2. 무역업무자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5.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 종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4(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의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기술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또는 전자무역문서의 전달
2.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거래자의 교육·홍보 및 자문
3.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지원
4. 기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장제1절(제10조 내지 제12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外國換管理關係法令"을 "外國換去來關係 법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物品의 輸出등 外貨獲得을 위하여 사용되는 原料·施設·機械 및 製品"을 "原料·施設·機材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이행기간"을 "이행기간·확인방법"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중 "輸出入物品"을 "수출입 물품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물품의 판매업자는 그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를 "물품등의 판매업자는"으로 하며,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의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항 내

지 제3항"으로, "輸入物品"을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로 한다.

3. 原産地表示對象物品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3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是正措置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중 "대상국가·제한범위 및 조사절차등에"를 "대상국가 및 제한범위 등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의 법령 또는 大韓民國이 당사자인 條約에 의하여 보호되는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商標權·著作權·著作隣接權·프로그램著作權·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權·地理的 표시 및 營業秘密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가. 原産地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3. 기타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중 "輸出入物品價格"을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물품"

을 "물품등"으로, "操作"을 "造作"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중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거래자에게"를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항중 "보고를 명할 수 있다"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8.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8의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9. 제3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제56조중 "제54조제2호·제55조제7호 또는 제9호"를 "제54조제2호 또는 제55조제9호"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過失犯)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제7호·제8호 또는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동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본문·동항 단서·제2항 본문·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3호, 제27조제2항 본문,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5조제7호,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제3호, 제52조, 제54조 본문·제3호, 제55조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중 "물품"을 각각 "물품등"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승인대상물품"을 "승인대상 물품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의 제목 및 제28조제1항제1호중 "수입물품"을 각각 "수입 물품등"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제27조의 제목 및 제28조제1항제5호중 "특정물품"을 각각 "특정 물품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 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 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하다.

⑦ 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은 삭제한다.

◇ 대외무역법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에 의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을 추가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출·수입하는 것도 무역으로 보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래의 알선 및 전자무역 문서의 중계나 전자무역에 대한 교육·홍보 등 전자무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전자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4).

다. 2000년 1월 1일부터 무역법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도가 실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현행 제10조 내지 제12조 삭제).

라.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2001. 3. 30.)부터 시행한다.